

22.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: 2020년 10월 26일
- 제안자 : 홍인표, 김대현, 김성태, 김원규, 김혜정, 윤기배, 윤영애, 이영애 의원
-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- 상정일자
  -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
  -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년 11월 24일) :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홍인표 의원)

### 제안이유

-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·운영·관리하고,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###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)

-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·지원 및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제8조)
- 대중교통 안전,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, 제10조)
- 대중교통 이용권장,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,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등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, 제12조 및 제13조)
-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
#### □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도로교통법」, 「도시철도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- 기 타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진성)

#### □ 주요 제정 내용

-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·운영·관리하고,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
- 안 제1조 ~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대중교통 및 대중교통수단 시설 등과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에 따른 대중교통전용 지구에 대한 정의,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 ~ 안 제5조는 시민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, 대중교통운영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,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특히, 안 제4조 제3항 및 안 제5조 제3항, 안 제10조에서 시민과 대중교통운영자,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·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,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 위생 증진 등에 적극 협조·노력하도록 하였는데, 이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방역의 중요성,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- 안 제6조 ~ 안 제9조는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,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, 대중교통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그 밖에 안 제11조 ~ 안 제14조까지는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시설확충,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,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및 그에 따른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.

#### □ 종합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시장의 대중교통 관련 책무,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권리와 의무,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,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치, 대중교통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보다 나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음.
- 한편,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선언적 조치의 성격으로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## 5. 토론요지

- 없음

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)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